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자료** 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4월 25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나기용 무역구제정책팀장(5551),
무역구제정책팀 홍장의 서기관(5553), 이헌두 사무관(5559), 조부임사무관(5552)

무역위원회, 3개 기업 FTA 무역 피해 인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현정택)는 4.24(수), 제31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, 무역조정지원 기업* 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하여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음

*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융자 등을 지원 제도(근거 :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)

○ A기업은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인해 '12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,

○ B기업은 스핀들, 볼스터 등 방적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'12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였으며,

○ C기업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미국산 수입 증가로 '12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음

□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 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

<붙임> 1.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부.

붙임 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무역 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**(요건)** ①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, 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, 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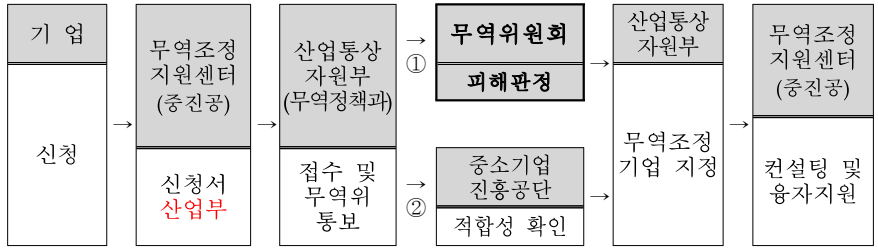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무역조정 지원 기업 신청 및 피해 판정 현황

<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(단위 : 개사)>

구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
신청	3	3	2	-	13	3
피해 판정	2	3	2	-	8	3

□ **(효과)**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, 컨설팅 자금의 80%를 지원하고,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(기업 당 40백만원 한도)

○ 시설 및 운전 자금 융자

- 대출 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

* '13년 2/4분기 현재 3.29%
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, 운전자금 5년 이내
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